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14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김태호・박충권・김기웅
이양수・이인선・김성원
최형두・조경태・신성범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는 장소의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전기자전거 충전소 및 자전거주차장치나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곳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됨으로써 시야각이 좁아져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제8호 또는”을 “제7호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호·제4호·제5호·제7호·제8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① ----------제7호 또는----------.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